

탁아 서비스 제공자에게:

1급 식비 변제(식비를 나중에 되돌려 받는 것) 자격을 원하시거나, 연방 농무부(USDA) 아동 및 성인 급식 프로그램(CACFP) 관할하에서, 본인의 자녀들에게 들어간 식비를 나중에 지원받기를 원하시면, 동봉된 급식 혜택 양식을 작성, 서명("싸인")하여 저희에게 반송해 주셔야 합니다.

1급 가정탁아소 자격 요건:

가정탁아소("family day care home")에 등록된 아동들에게 제공한 식비를 돌려 받는 1급 식비 변제 신청 자격이 되려면,

- 학군 또는 인구 조사 통계 자료에 따라 지정된 영세민 지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는
- 급식 혜택 양식(Meal Benefit Form)을 작성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급식 혜택 양식에 기입한 내용을 기준으로 1급 가정탁아소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 경제 지원" 자격으로 1급 식비 변제를 받으려면:

- 급식 혜택 양식을 작성한 다음에 서명하여 보내 주셔야 합니다;
- 가정탁아소 사업의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당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 "개인 경제 지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득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번 난의 네모칸에 체크(Y)를 함으로써 가정탁아소 운영자로서 1급 혜택을 신청한다는 것을 표시하십시오.

법 규정상, 급식 혜택 양식에 기입된 소득 액수의 정확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급식 혜택 양식과 함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가정탁아소를 지난 해에도 운영하셨다면, Schedule C를 포함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tax return)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소득 증명 서류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를 포함, 가구 내 모든 사람들이 받은 급여 명세서;
- 정확한 소득이 명시된 가장 최근의 세금 신고서 사본;
- 가구 내 모든 사람들의 기타 소득 명세서;
- 지난 달 가구당 총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 및 소득 및 지출 명세서.

자신의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 변제 신청 자격 요건:

자신의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를 나중에 지원 받으려면, 급식 혜택 양식(Meal Benefit Form)을 기입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영세민 지구에 사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해도, 본인의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CACFP 규정에 의해 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소득 내용을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엔, 저희가 일부러 요구하지 않는 이상,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는 곳이 영세민 지구가 아니거나, 이 양식의 작성을 원치 않으시거나,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엔, 가정탁아소에 등록된 아동들에게 들어간 식비에 대해, 2급 식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민 지구에 거주하시는 이유로 1급 가정탁아소로 별씨 분류되셨다면, 본인 자녀에게 들어가는 식비를 변제 받기 원하지 않는 한,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주 지역이 영세민 지구에 속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시면,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항:

미 농무부(USDA)는 “가구”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사는 (예컨대, 생활비를 같이 쓰는) 혼연, 또는 비혈연 집단 (따라서, 하숙집이나 기숙사 등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급식 혜택 양식에 신고된 소득은 가구 내 모든 사람의 총 소득을 출처별로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하시는 소득은 지난 달 가족 한명의 소득을 출처별로 기재한 총 소득이어야 합니다. 지난 달 소득이 평소 월 소득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평균적인 월 소득을 추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지난 달 소득을 평균적인 월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당 소득이 첨부된 소득 도표(Income Chart)에 나와있는 가구 규모에 해당되는 액수와 같거나 더 적으면, 더 높은 단계의 식비 변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이후 그 해 안에 소득이 높아진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가구 규모가 작아진다거나 소득이 한 달에 50불 이상, 또는 1년에 600불 이상 늘어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푸드스탬프, TANF(영세민 가정 임시지원), 또는 FDPIR(인디언 보호지역 급식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셨거나 이 프로그램들의 케이스 번호를 기재하셨으면, 그런 혜택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때에도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실직 하시거나 실직 중 소득 상실로 인해 가구당 소득이 적어져서 신청 자격 기준에 맞게 되는 경우에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식 혜택 양식 기재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양식에 기입하신 내용은 1급 식비 변제 자격 여부나, 자신의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 변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아동 영양, 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 혜택의 수혜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이 정보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별 조항:

미 농무부(USDA)는 산하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다른 어떤 형태의 의사전달 수단(점자, 큰글씨, 오디오 테이프 등)이 필요하신 장애인들은 농무부(USDA) 타겟(TARGET) 센터, 전화번호 (202) 720-2600(음성통화 및 농아자용 TDD)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Room 326-W, Whitten Building, 14th and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202) 720-5964 (음성통화 및 TDD). 농무부(USDA)는 정책 시행 및 고용에 있어 기회 균등 원칙에 따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기관 담당자 서명

날짜